

성결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공익침해행위”란 본교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2.“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3.“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5.“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6.“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정직, 감봉, 견책,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파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고과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성결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5-3-35)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본교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본교와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자

제3조(담당부서)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한다.

제 2 장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제4조(공익신고의 접수 등) ① 공익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의 공익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와 함께 공익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 대상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신고 대상 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신고 행위의 증거 등

③ 담당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운영위원회) ①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익신고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사항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사항

② 공익신고운영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처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

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공익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접수
2. 신고 사항 검토 및 조사 여부 판단
3.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조사 여부 통지
4. 공익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필요 조치
5.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처리 결과 통보
6.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제7조(공익신고의 조사 중지 및 중단)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이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할 경우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 접수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

성결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5-3-35)

며, 공익신고자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보호조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학에 그 조치의 원상회복 등의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징계의 감면)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한 공익신고자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 4 장 보 칙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담당부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30일자로 시행한다.

② (준용기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성 결 대 학 교 총 장 귀하